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견서

2019. 2. 20.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 요약 >

ㅇ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독립경영 보장을 위하여 KT의 지분(49.99%)을 30% 미만으로 낮추고 이를 다양한 공적 기관으로 분산해 다가오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ㅇ 국내유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구 한국디지털위성방송)가 2011년 KT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유는 표면상 심각한 경영위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및 이와 연동된 2009년 국회의 위성방송 소유지분 제한(49%) 폐지 방송법 개정 때문입니다.

ㅇ 2001년 국민의 정부 때 국책사업자로 출범한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까지도 독점사업자로서, 사업영역 내에 경쟁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케이블방송이나 IPTV 사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ㅇ 특히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시대를 맞아 그동안 간과돼온 위성방송의 통일매체로서의 정체성이 부각, 복원되고 있습니다.
- 위성방송은 남북한 전(全)지역에 송출·수신할 수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지역에 최적의 매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대비사업은 국가적 과제로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이 향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ㅇ 또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같이 유선 통신망이 두절된 경우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재난방송기능 활성화도 새롭게 떠오르는 공적 요구 중 하나입니다.

ㅇ 이제 국회와 정부가 퇴색된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국회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맞아 위성방송에 부과된 시대적 과제와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현재와 같이 KT에 예속된 상황으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은 고사하고 지속 가능성조차 담보할 수 없습니다.
- KT 지분(49.99%)을 낮추고 이를 공공부문이 흡수함으로써 위성방송이 본래의 공적 플랫폼[1]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국회)** 국회는 정부와 KT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 독립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주문하고, 필요시 합산규제, 유료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등의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남북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틀에서 위성방송 소유구조의 공적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방송법과 재허가 부관조건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강화 그리고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위성방송이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 **(KT)** 국민기업을 자임하는 KT 또한 국회와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공모절차 마련,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균형화 등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지분 매각에 최대한 협조해 국민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ㅇ **[별론]**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상 부활해야 합니다.
- 가입자 규제는 시청점유율 규제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여론다양성을 보호하는 필수적 장치
- 위성방송은 2001년 출범시 국책사업자로서, 독점사업자로서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2011년 KT에 인수되면서 가입자 규제의 공백이 논란됨 →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는 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이유 ①)** KT그룹에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CATV와 다른 IPTV는 33% 규제를 받는 역(逆)규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유 ②)** 가입자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한 CATV 인수·합병을 바탕으로 형성된 KT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편익 및 협력사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1) 2001년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들과 케이티가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하였습니다.

< 배경 및 근거 >

1. 위성방송의 공적 정체성 복원

가. KT의 위성방송 인수 배경

○ KT는 2011년 KT스카이라이프가 어려운 경영 상황이었기에 위성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하였다고 주장

○ 하지만, 실적지상주의를 추구해온 이석채 체제의 KT가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함

○ 2011년 KT의 인수 당시 KT스카이라이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일방적인 시각
- KT가 호의로, 인정상 경영 위기의 위성방송을 인수했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려움
- KT스카이라이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초기 투자비용 및 지상파방송 재전송 불허에 따른 추가적인 마케팅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
- 하지만 2011년 인수 이전인 2006년부터 이미 KT스카이라이프는 흑자로 전환
- 2011년 인수 당시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던 상황이며 자본금을 메워가던 시기 → 2009년말 자본 감자는 조기 상장을 위한 조치였음

<표 1> 2001년~2017년 재무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방송사업 매출	401.9	1,010.9	1,945.0	2,686.0	3,176.3	3.239.3	3,498.5	3,503.3
당기 순손익	(1,161.9)	(1,684.5)	(1,379.8)	(791.7)	35.5	431.9	216.0	248.1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방송사업 매출	3,515.4	3,738.5	4,993.2	5,456.6	5,532.4	5,496.1	5,656.3	5,753.9
당기 순손익	403.7	312.6	561.5	725.5	555.5	744.4	659.4	551.8

○ 2011년 KT가 위성방송을 인수한 이유는 ① 지속적인 위성임차료 수익 확보, ② 당시 지상파방송, 스포츠채널 등에서 콘텐츠 열위였던 KT IPTV인 OTV(Olleh TV)와 위성방송 간의 제휴를 통해 가입자 조기 확보, ③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확장성을 견제·제한하려는 전략 등을 위해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나. KT의 인수 이후 위성방송의 현실

○ 근본적인 문제는「동일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결국 누가 그 시장에서 살아남겠느냐」는 것

○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대주주 KT를 위한 가입자 곳간이자 터널링(이익편취)의 희생양인 상황

- ① 과도한 위성임차료, ② 가입자 퍼가기, ③ 선도사업 방해, 그리고 ④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이 대표적인 대주주 KT의 횡포

○ **(과도한 위성임차료)** 통상 시세 대비 과도한 임차료로 인한 재무적 부담 가중

- 매년 460억원이 넘는 위성임차료를 KT가 100% 소유한 kt sat에 지급
- 무궁화 7호기를 새로이 사용함에 따라 위성임차료는 500억원을 넘어서게 됨
- 위성임차료 단가는 kt sat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형태이며 위성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kt sat과 같은 위성체 보유사 간의 경쟁을 통해 구매단가를 낮추어야 함
-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KT와 수직 관계로 인해 통상적인 국제시세에 비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 비싼 가격으로 임차하고 있다는 논란이 사업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인공위성은 15년간 운용하며 위성체 가격 약 1,500억원, 발사체 비용 약 800억원 등 약 2,300억원이 위성 가격임, 여기에 지구국 구축비용과 인력비·운용비용 등 최대 1,000억원을 합쳐 15년간 약 3,300억원이 투입됨
- 반면, 위성방송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KT(2011년까지) 또는 kt sat(2012년 이후)에 지급한 위성임차료 총비용은 7125.1억원임
- 무궁화 5호기 백업위성 비용(연간 9억 미만)과 KT 또는 kt sat의 기업이윤을 감안하다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임

<표 2> 2002년~2017년 위성임차료 지급현황(단위 : 억원) * KT스카이라이프 사업보고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 간	466.1	466.1	474.3	493	493	493	503	513
누 계	466.1	932.2	1406.5	1899.5	2392.5	2885.5	3388.5	3901.5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 간	500.7	503.7	454	449	433	441.6	441.6	441.6
누 계	4402.2	4905.9	5359.9	5808.9	6241.9	6683.5	7125.1	7566.7

○ **(가입자 퍼가기)** 제휴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가입자를 전환 대가없이 무상으로 KT IPTV인 OTV(Olleh TV)로 대량 전환

- 위성방송은 ① 위성전용상품과 ② KT IPTV와 제휴상품인 OTS 상품 등 2가지를 주력으로 판매해옴 (최근 안드로이드 상품이 추가)
- OTS는 양사 제휴상품임에도 가입자 데이터와 AS/상담 등 고객관리 전부를 KT가 독점 (2017년부터 가입자 데이터의 일부분만 위성방송이 열람하고 있음)
- KT가 OTS상품의 고객관리를 사실상 독점함에 따라, OTS 상품의 약정기간 만료시나 AS 수행때 고객정보를 이용해 KT단독상품인 OTV로 적극 전환하고 있음
- 특히 KT출신 첫 사장인 강국현 대표는 권한대행 때부터 ① OTV로 전환시 부과하던 설치비, ② OTV로 전환되는 월 가입자수 상한제 등 전환 방지 허들 제거
  . 그 결과 양사 제휴상품인 OTS의 양질의 가입자를 꾸준히 KT 단독상품인 OTV 가입자로 전환 중
- ① OTS와 KT Giga Genie가 결합된 <OTS 기가 지니> 상품 출시가 늦어지고, ② 고객도 기가 기지 상품을 원한다는 것이 이러한 대량 전환의 표면적 이유
- 실제로는 KT 지사와 대리점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OTS → OTV로 전환해 옴
  . 작년 대비 올해 OTS 가입자의 OTV로의 전환된 해지자 수는 월 평균 2천여 개가 더 증가 → 약 30% 증가 (전체해지 6.5% 증가 = 일반해지 0.5% 감소 + 전환해지 29.6% 증가)[2)]
- 개국 이후 최초로 2018년 가입자 순감으로 돌아섬

2) 일반해지는 OTS에서 KT OTV 이외 다른 유료방송으로 넘어가는 해지이고, 전환해지는 OTS에서 KT OTV로 넘어가는 해지를 가리킨다.

○ **(선도사업 방해)** ① 2016년말 국내최초로 위성방송이 넷플릭스와 제휴하려는 계획을 KT가 좌절시키고, ② 2017년 KT스카이라이프의 OTT 서비스인 Telebee가 KT OTT (올레TV 모바일)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을 막아 TV향 서비스만 제공하게 함

○ **(노동조합활동 방해)** KT출신 첫 사장인 강국현 대표는 황창규 KT회장의 측근으로서 2018년 취임 이후, KT를 위한 종속경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위성방송의 경영자율성을 요구해온 노동조합에 대해 ① 노동조합의 활동 비난과 조합집회 불참 독려, ② 조합 집회에 나온 조합원 회유, ③ 대의원에 대한 대의원회 발언지침 하달, ④ 상당한 영업이익에도 2018년 임금협상 최종결렬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

다. 지금 위성방송의 공공성이 특히 부각되는 이유

○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꾸기 이전의 사명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로운 실현」을 주요 사업목적[3]으로 하여 2001년 출범한 국책사업자이자 독점사업자로서 태생적으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됨

○ 또한 방송사업자의 공공성은 ① 공공성의 일반적 개념과 ②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남

○ 먼저 일반적으로 공공성은「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4]이라고 정의됨. 여기서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시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며 공개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확인된다고 보고 있음
- 통일매체이자 재난방송으로서의 위성방송의 정체성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인정, 즉 국책사업으로서의 출발에서도 잘 나타남

○ 더불어 공공성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임(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제6조)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남

3) KDB, 위성방송 사업계획서 (2000.12월)
4) 조한상 교수(청주대학교),「공공성이란 무엇인가」(2009)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ㅇ 이를 반영하여 2015년 12월, 구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통일매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재허가 부관조건을 부과함

〈표 3〉 KT스카이라이프의 2015년 재허가 부관조건 중 주요내용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장기적 성장,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 책임 실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획 또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재)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① 경영의 투명성 ·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② 향후 5년간 사업 · 투자계획(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계획, 추정 재무제표 포함) **③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④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 ⑤ 방송 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 방송사업자의 기본적 책무 이행에 부합하는 **사회적 · 문화적 기여방안(독자적 사회공헌활동 및 직원역량 강화계획 포함)** ⑥ 시청자와의 소통 창구 확대, 시청자위원회 구성 · 운영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한 시청자의 권익 보호 · 확대방안

라. 재허가 부관사항 이행현황 검토

1) 위성방송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개선방안

ㅇ 2015년 12월 재허가 사전 동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 요구한 경영 자율성의 내용은「이사회 및 주요 의사결정 논의기구에서 대주주 KT의 영향력이 과도한 점을 개선하라」는 것임

ㅇ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주문과는 관련이 적은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위원 3인 중 사외이사 1인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으로 이를 대체함

- 이렇게 방통위의 요구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동문서답을 하였으나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는 아직도 이를 바로잡고 있지 않은 상황

ㅇ 과기정통부는 KT가 소유지분을 낮추기 이전이라도, 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공모절차 마련과 ② KT에 독점된 이사회의 다양화와 균형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대주주 KT가 취하도록 요구해야 함

2)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ㅇ 위성방송은 2001년 국민의 정부 국책사업의 하나로 난시청 해소, 고품질 콘텐츠 제공 및 통일대비 플랫폼으로 출범

- 통일대비 플랫폼으로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신포 등 북한지역에 방송 송출

ㅇ 이제 본격적인 남북공존시대를 맞아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통일대비 국가비상채널 확보 등을 위해 남북한 방송교류는 핵심적 국정과제로 부상할 전망

- (예시) 정부와 국가기간방송인 KBS 그리고 북한 전지역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통일전문채널 론칭 → 남북교류·협력 콘텐츠 제작 → 남북한지역 송출 등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것 검토

ㅇ 정부는 이를 위해 ① 법적 근거 마련과 ② 재정적 지원방안 수립 그리고 ③ 참여 사업자들의 공동협력과 역할분담 등 통일대비 방송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

3) 사회적 · 문화적 기여방안(독자적 사회공헌 활동)

ㅇ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그 위상이 일부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국책사업자로서, 현재도 독점사업자로서, 출범 때부터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와는 다른 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

- 치열한 유료방송시장에서 매년 700억원에 가까운 안정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음
- UHD방송과 방통융합형 신사업 등 새로운 방송수요에 대처하고 사회적 책무에 걸맞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직원역량 강화와 함께 특히 사회공헌활동은 위성방송이 제 역할을 다해가는 데 중요한 초석

ㅇ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듯 KBS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시청해소 사업을 제외하면, 연간 1.8억원(2018년)~7.4억원(2017년)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음

〈표 4〉 사회공헌활동 시행내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소계	3년간 비중
난시청해소사업	10.65억	9.4억	9.4	29.45억	(69.7%)
위성방송 시청지원 사업(사랑의 안테나)	0.3억	0.3억	0.3억	0.9억	(2.1%)
기타 사회공헌사업	3.23억 (어린이병원 건립기금 등)	7,12억 (KT그룹 사회공헌기금 등)	1.58억	11.93억	(28.2%)
합계	14.2억	16.82억	11.23억	42.28억	100%

ㅇ 따라서 ① 위성방송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②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③ 소요예산 증액 및 담당인력 확충이 절실함

2. 위성방송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

가. KT지분(49.99%) 분할매각

ㅇ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KT를 위한 가입자 곳간이자 터널링(이익편취)의 희생양

- KT로부터 독립이나 경영 자율성의 보장이 없다면, 위성방송은 앞으로 생존을 모색하거나 발전 전략을 가동할 수 없는 족쇄에 묶이게 됨

○ 방송법상 유료방송의 소유·겸영 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본다면, KT에 지분 매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위성방송의 통일매체·재난방송으로서 정체성을 고려하고 국민기업을 자처하는 KT의 대승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지분 매각을 통한 위성방송의 독립을 요구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과 관계가 있는 국민연금,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공적 기관이 KT 지분을 블록딜(대량매매)로 인수케 해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
- 대주주 KT는 그동안 과도한 위성임차료를 통한 수익 확보와 가입자 퍼가기 등을 통해 투자금액 대비 충분한 수익을 향유하였고, 앞으로 상당기간 주식의 대폭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KT가 주장하는 배임 위험은 설득력이 떨어짐

○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없이는 KT지분 매각은 표류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공적 투자자를 매칭하여 KT 지분을 매각하는 노력 필요

나. 방송·문화 부문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 참여

○ 북한 전지역으로 송출·수신이 가능한 유일한 방송 매체로서 위성방송이 방송·문화 측면의 남북교류·협력에 기여

- 우리나라 NTSC 방식 vs. 북한 PAL 방식 간의 호환 및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지역에 최적의 방송 플랫폼은 위성방송이 유일

○ 방송(채널) 송출 차원을 넘어 (예컨대) 기간방송인 KBS와 함께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채널 운영, 남북공동 문화예술행사 주최 등 다양한 활동 가능

다. 유선 통신망 불통 시를 대비한 재난방송으로 활용

○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같이 유선 통신망이 불통될 경우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위성방송은 무선 기반의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증가로 이동통신사에 자연재해, 비상사고, 통신두절 등 문제가 발생하면 복합적으로 방송통신이 단절 → 무선망을 쓰는 위성방송으로 방송 측면 보완 필요

라. 방송통신시장 독과점에 대응할 공적 플랫폼으로 복원

○ 유료방송시장이 급격히 3개의 거대 통신사업자로 독과점되고 있는 상황
- 유료방송시장은 플랫폼간 인수합병 →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 M&A로 전환됨
- IPTV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넷플릭스 대응을 위한 몸집 키우기는 오히려 통신시장과 함께 유료방송시장마저 독과점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

○ 유료방송 M&A로 통신사업자들의 독과점이 완성되면, 수익 추구와 경쟁 논리에 밀려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는 점차 등한시되고 소비자편익 역시 위협받을 것

○ 이에 거대 통신사업자의 자본 논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적 플랫폼 필요성 대두
- 퍼블릭 엑세스 보장, 공익·공공채널 송출 및 지원, PP와 상생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청자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시청자복지 실현 등 유료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무와 함께 유료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라 할 공정경쟁을 담보할 유료방송정책의 공적 플레이어로 위성방송을 재설정할 필요성 절실

마. 위성방송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위성체 소유 준비

○ 위성방송이 위성체가 없는 문제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의 우주개발계획과 조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위성체 소유를 준비해야 함
- 이는 재무적 부담의 경감과 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바. 긴급조치로 재허가 부관사항 이행계획 수정 요구 및 이행실적 충실 감독

○ KT로부터 경영독립 이전이라도,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자율경영 복원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
-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부관조건 중 <경영의 투명성·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정확한 주문 내용에 맞는 수정·보완을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즉시 요구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함

○ 위성방송은 2020년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음, 이때도 2015년말 위성방송 재허가 시 부과된 부관사항을 주문의 요구대로,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적극 반영해야 함

3. (별론) 합산규제 부활 필요성 검토

○ 가입자 규제는 시청점유율 규제(방송법 제69조의2)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여론다양성을 보호하는 필수적 장치로 반드시 존속돼야 함

○ 위성방송은 2001년 출범시 국책사업자로서, 독점사업자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입자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2011년 KT에 인수되면서 경영종속이 심화되자 가입자 규제의 공백이 논란됨

- 2018년초 합산규제법안 연장 논의시 케이블방송협회는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CATV를 우회인수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지적 → KT는 위성방송을 통해 인수하지 않겠다고 주장
- 그러나 2018년말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며 KT의 위약(違約) 논란 발생 → 결국 KT는 지난 2월11일 위성방송을 통한 인수 포기

○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에 대한 역차별이란 KT의 주장 못지않게, 위성방송의 가입자규제 공백으로 인한 다른 CATV 및 IPTV 사업자에 대한 가중된 규제의 문제도 고려해야 함

- KT의 역차별 문제 vs.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역규제 문제

○ KT의 비협조로 인해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2차적으로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복원되지 않는 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음 (끝)